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2년 6월 03일

○ 회부일자 : 2022년 6월 03일

3. 제안사유

-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 등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인상하여 납세 편의를 향상 시키고자 함.

4. 주요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적용일을 현행 ‘취득일’ 에서 ‘등록일’ 로 변경하여 추정기산일과 일치시킴에 따라,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적용일도 동일하게 변경하고 관련조문을 정비 (안 제2조)
 - (현행) 취득일(취득하는) → (개정) 등록일(취득하여 등록하는)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세액공제 적용 납부방식이 확대됨에 따라, 감면 조문 제목 변경 (안 제13조)
 - (현행)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 (개정)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자동이체 등 세액공제 범위 상향 확대에 따라 세액 공제액 인상 (안 제13조)
 -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 신청시 : 고지서 1장당 150원 → 250원
 -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모두 신청시 : 고지서 1장당 300원 → 500원

5.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이덕항)

가. 제출배경

- 본 조례안은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과 관련해, 감면적용일을 현행 취득일에서 등록일로 변경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변경한 것임.

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에서는,
 - 먼저, 제1항에 기술되어있던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관한 기본 규정과 면제 대상 자동차에 대한 규정 내용을 별도 항(제1항, 제3항)으로 나누어 기술함으로써 항 내용의 간결성 제고를 통해 도민이 조문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안 제1항에서는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 시점을 현행 조례에서 “차량을 취득하는 시점”으로 규정한 것을 “차량을 취득하여 등록하는 시점”으로 변경하여, 취득세 감면에 대한 추정 기산일과 일치시킴. 이는 자구 해석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오해 소지를 불식시킨 것으로 타당하며,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음.
- 안 제13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에서는,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제1항의 개정에 따라, 자동이체 납부 방식이 전자송달방식,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 계좌 자동이체 방식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조 제목을 현행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에서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로 변경함.

-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시행에 따라, 현행 법률에서 정한 최소한의 금액 수준으로 세액공제 감면액을 확대한 것으로 법적 문제가 없음.
-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 신청시 : 고지서 1장당 150원 → 250원
-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모두 신청시 : 고지서 1장당 300원 → 500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개정내용>

개정 이전	개정 이후 (개정 2021. 12. 28. / 시행 2022. 1.1.)
제92조의2(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본문 생략)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부터 5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부터 1천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제92조의2(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본문 생략)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250원부터 8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부터 1천6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과 관련해, 감면적용일을 현행 취득일에서 등록일로 변경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을 하고 있음. 이는 도민의 이해편의를 돕고, 자구 해석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오해 소지를 불식시키며, 법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내용 상 타당하며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음.